

▣ 붙임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1. 요약

-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법무부는 개정의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만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들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검·경 간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이 대거 추가되었음. 이에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포함된 다수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함.

- 1)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또는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관련 이견 등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대상 중요사건을 크게 확대한 안 제7조, 제8조는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경찰의 관여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송치 전 수사 지휘로 활용될 여지가 크고, 사건의 범위 및 요청 시 응해야 할 의무만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 조항이 없음. 7조 1항과 8조 1항은 현행을 유지해야 하며, 신설 7조 2항은 삭제해야 함.
- 2) 경찰의 수사 중 직접수사 개시범위 외 사건에 대한 의무 이첩 조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삭제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접수사를 가능케 하므로 현행 제18조 제1항을 유지해야 함.
- 3) 영장 청구 및 신청 시 수사기밀 노출 주의의무를 명시한 안 제37조는 수사 밀행성을 사유로 피압수자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37조의 ‘수사기밀’ 부분을 삭제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 함.

- 4) ▲ 검사의 사건 수리 이후 1개월 경과한 경우, ▲ 검사가 상당히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우, ▲ 중요사건에 대한 검·경의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등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한 안 제59조 제1항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그 근거 또한 검사의 재량 여하에 따르고 있어 직접 보완수사 대상 사건을 검사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대신 고소인의 이의신청사건을 검사의 원칙적 직접 보완수사 대상 사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5) 재수사 이후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검찰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 안 제64조 제2항 제2호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므로 현행 제64조 제2항을 유지해야 함.
- 6)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간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기한만 3개월로 제한을 둔 안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은 수사 기간 단축의 책임을 경찰에만 일임하고 있고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므로 삭제해야 함.

2. 배경과 취지

- 2020년과 2022년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은 독립적 1차 수사를, 검찰은 2차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면서 검·경은 일방적 지시·간섭의 구조에서 상호협력 구조로 변경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은 해당 개정의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검·경 간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음.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롯해,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확대를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음.
-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법무부는 개정의 이유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하고,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민 보호 공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지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음. 수사준칙의 제정이유 또한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에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 수사 지연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협력체계가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개정안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은 검·경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모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사실상 수사 지휘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음. 특히 수사준칙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의 위임에 따라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명시적 위임을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국회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수사준칙 개정은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아래 개정안 조항별 의견과 같이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제거되어야 하며,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

3.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중요사건 협력절차 및 검·경 협의(안 제7조, 제8조)

현행	개정안
<p>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u>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u>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u>대공(對共)</u>, 선거(<u>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u>),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u>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한 사건</u>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u>그 밖에</u>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p>(신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시·교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p>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영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p>
<p>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건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u></p>	<p>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건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u></p>
<p>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건의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7. 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p>	<p>(삭제)</p>
<p>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p>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제7조 제1항에서는 중요사건을 규정하며 사건의 검찰 송치 전에 이에 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 또한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과 관련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일방의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또는 협의 요청 등은 개정안의 의무규정 없이도 가능한 내용임. 오히려 의무 규정은 경찰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검찰은 이를 정보수집의 통로로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음.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1차 수사를 맡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송치 전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이 있을 시 경찰이 검찰에게 사실상 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상호 간의 협력보다는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송치 전 초기부터 지휘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음. 특히, 검찰은 송치 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송치 후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협의절차가 될 것임. 게다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 사안에 검찰의 협의 요청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큼. 오히려 수사와 기소 분리의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건처리 방향에 경찰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경찰의 요청을 통해 검사가 협력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 제7조와 제8조는 “중요사건 협력절차”나 “협의”라는 조항 명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응해야 할 의무만 규정할 뿐 막상 실제 협의 요청의 접수

방법이나 처리 절차, 책임자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의견 제시·교환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건 정보 공유의 경로도 불투명함. 의견교환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보공유를 전제로 이뤄야 하나, 개정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찰의 수사 정보에 대한 검찰의 접근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정보 수집을 위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큼.

- 개정안은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통해 중요사건의 범위에 ▲ 대공, ▲ 노동, ▲ 집단행동, ▲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 조직범죄 관련 사건을 추가하였음. 이는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부패범죄, 경제범죄)이 아닌 영역으로,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경찰 수사를 초기부터 지휘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대공 관련 사건의 추가는 국정원으로부터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 지휘의 형식으로 대공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임. 이미 검찰은 지난 5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여 공안 정세분석 등을 관장했던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을 사실상 부활시킨 바 있음. 노동과 집단행동 관련 사건의 추가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춰, 정부비판적 노동사회단체 수사에 검찰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음.
 - 이미 현행 수사준칙에서 선거 관련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은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추가로 명시하였음. 개정안 제7조 제2항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전에 의견 제시·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중복된 규정을 통해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포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제한 없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수사준칙 및 개정안에서는 상호협력의 원칙(제6조), 중요사건 협력절차(제7조)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제8조)의 순서로 조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일반적인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중요사건 협력절차’보다 앞의 순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사준칙 제9조에서 수사기관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구성으로 반기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 사건이 아닌 정책적, 추상적 협의체에 불과함. 수사준칙 제7조와 제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 및 경찰관서의 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협의 및 협력의 구체적 절차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때문에 개정안은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줌으로써 검사가 일방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경찰청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음. 구체적 사건에 관한 협의나 의견교환은 개별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간에 상설 협의체를 두어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조항 개정 반대함. 본래 수사준칙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신설 제7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함. 아울러 제7조에는 중요사건 협력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와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9조의 수사기관협의회 이외에 개별 중요사건 관련 협의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혹은 지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규정하여,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 사건 의무 이첩 조항 삭제(현행 제18조 제1항 제2조)

현행	개정안
<p>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u></p> <p>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p>	<p>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u>검찰청법</u>」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u>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u></p>
<p><u>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u></p>	<p>(삭제)</p>

<p><u>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u></p>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 제18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검찰청 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함.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도중에 다른 성격의 범죄로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검찰과 경찰이 모든 사건 접수를 의무적으로 수리하도록 한 개정안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항과 함께 적용될 경우, 검찰은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수사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우선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됨. 해당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며, 악용 여지가 상당히 큼.

→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함. 제18조의 현행 조항을 유지하여 검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검찰청 외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함.

3)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p>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p>	<p>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u>수사기밀 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u></p>

	<u>한다.</u>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은 영장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였음(제32조의2 신설, 제38조 개정).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개정안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중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개정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개정안 제37조에 추가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사협력 관련 사안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함. 따라서 법규명령의 성격이 있는 수사준칙에 굳이 명시해 둘 필요는 없음.
 - 특히나 개정안 제37조에서 ‘수사기밀’ 또한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영장 사본 교부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2022년 2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영장에 따른 처분을 받는 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개정안 제37조가 수사기밀 노출 주의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검사나 경찰이 수사기밀을 앞세우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정보를 영장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검사나 경찰의 재량에 따라 부실한 내용의 영장이 청구될 경우 해당 영장을 교부받을 피압수자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37조에서 ‘수사기밀 또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현행 조항을 유지해야 함.

4)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안 제59조 제1항,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u>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u>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u>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u>

<p><u>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u>요구하는 것을</u> <u>원칙으로 한다.</u></p>	<p>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u>요구할 수</u> <u>있다. 다만,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u> <u>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u> <u>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u> <u>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u> <u>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u>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u> <u>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u> <u>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u></p> <p><u>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하여 해당</u> <u>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u> <u>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u></p> <p><u>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u> <u>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u> <u>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u></p> <p><u>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u> <u>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u> <u>증거수집의 대상, 범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u> <u>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u></p>
<p>(신설)</p>	<p><u>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u> <u>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u> <u>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u> <u>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u> <u>적합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u> <u>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u></p>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현행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로 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모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형식상 규정하면서도, 단서를 달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의 이익이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위 59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위반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화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검사의 권한을 키우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 제5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사건송치 이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검사에 의해 상당한 보완수사가 이뤄진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됨. 보완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사유는 그 판단기준과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한 수리 후 1개월의 기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일정 조율에 좌우될 수 있어 문제가 있음.
 - 개정안 제59조 제1항 제4호는 개정안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송치받은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개정안 제7조와 제8조는 중요사건 등에 대한 송치 전 협의와 송치 과정 협의를 의무화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는 조항임. 결국 검찰이 경찰 수사 개시 시점과 송치 시점 모두에 개입 및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송치 후 보완수사도 직접 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있어 검사의 권한이 확장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형해화될 것임.
 - 제1항 단서에 포함되는 사건이 절대다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2항에서 규정된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는 보완수사요구 여부 판단에 유효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 조항이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본 조항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이 되는 경우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 또한 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사건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끔 함. 이는 검사의 판단이 아닌, 고소인의 판단에 따른 송치사건(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경우는 검사의 직접수사 원칙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남.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의 대상을 나열한 개정안 제1항 각호의 단서 중 제1호, 제2호, 제4호는 삭제하고 대신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을 추가해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함. 경찰과 검찰이 사안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고,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 소지나 권한 남용,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수사하도록 현행 조항의

본문을 “검사는 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의 경우로서 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4 제1항, 제198조의2 제2항,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개정해야 함.

5) 재수사 결과의 처리 (안 제64조 제2항)

현행	개정안
<p>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u>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p>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u>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u> 2. <u>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u> 3. <u>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u> 4. <u>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u>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 제64조 제2항에서는 재수사 이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를 추가함. 제2호의 추가는 기존에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없이 확장한 것으로, 검사가 요청한 사항을 경찰은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검사의 지휘권을 확고히 할 우려가 있음. 검찰에서 종결을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이 이행하기 어려운 재수사요청 사항을 남발하여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넘어,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검사의 일방적 우위를 형성하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임.

- 개정안 제64조 제2항의 모법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인식하게 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수사준칙은 이미 ▲ 관련 법리 위반, ▲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 공소시효·형사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 송치요구 사유를 모법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64조 제2항 제2호로 개정안에 추가된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조치요구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이는 모법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석한 것으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이 규정한 범위 이상으로 검사의 권한을 넓히려는 시도임.

→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함. 제64조 제2항은 현행을 유지해야 함.

6)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 (안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4항 신설)

개정안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은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함.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힘. 하지만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기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검찰의 수사 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음. 본 개정안으로 범위가 확대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제59조 제1항)와 재수사요청 이후 송치 받은 사건(제64조 제2항)의 수사 기한은 제한되지 않고 있음.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수사 기간임. 검찰의 수사 기한은 규정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기한만을 제한한 해당 개정안은 수사 기간 단축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임. 이는 검·경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 및 현행 수사준칙의 목적과 달리, 경찰을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검찰주의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냄.
 - 방치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대안은 필요함. 하지만 대형 사건 수사 등 3개월 이내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또한 고려해야 함.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른 예외 없이 일률적 수사 기한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개정안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재수사 이후 송치요구의 사유로 규정했음을 고려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3개월 내 재수사 등을 마치지 못한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가져와 진행할 수 있게 됨. 경찰이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도록 검사가 무리한 재수사 요청을 한다면, 검찰이 원하는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임. 타 조항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간섭을 크게 늘리면서 수사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면 송치 이후의 적극적 협력절차를 규정하여 양 기관이 적시에 보완수사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함. 개정안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은 삭제해야 함.